

SAMIL*i*.com

2024년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조특법의
세액감면 · 세액공제

세무사 이은자

이은자 세무사

이은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서울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등 세법전문강사

삼성전자, 태영건설, 해성그룹 외 다수 강의

목 차

I. 중소기업 판정

II.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2) 창업중소기업감면 (조특법 제6조)
- (3) 세액감면 공통사항

III. 연구인력개발 ·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 (2)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IV.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

-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의4)
-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 (3) 통합고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8)

Ch.01

제 1회차 강의

중소기업의 판정

I. 중소기업 판정 (조특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제외

- ① **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
-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③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I. 중소기업 판정 (조특법 시행령 제2조)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사업 연도	· · ·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적합 ^③ 여부	적 정 부 정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사 업 요 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01) ()업	(04)	(07)	적 합 (Y)	(26)
		(02)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부 적 합 (N)	
규 모 요 건	○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18)	적 합 (Y)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 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적 합 (Y)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나. 자산총액(12) () 억원			부 적 합 (N)	적 합 (Y)

I. 중소기업 판정 (조특법 시행령 제2조)

기업	㉞ 독립성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㉞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합 (Y) 부적합 (N)	부 (N)
	㉞ 유예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㉞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년)	(20) 적합 (Y) 부적합 (N)	

I. 중소기업 판정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소 기 업	㉮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 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 매 출 액 - 당 회사(14)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억원) 이하	(22) (Y), (N)	적 (Y) 부 (N)

I. 중소기업 판정 (조특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 판정의 세부사항

(1)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

I. 중소기업 판정 (조특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 판정의 세부사항

(2) 관계기업의 매출액

- 관계기업 :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직접 · 간접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 · 종속기업
- 관계기업 매출액 판단

지배형태	지분율	매출액 계산
형식적 지배	30%~50%	지배기업 매출액 + 종속기업 매출액 x 지분율
실질적 지배	50% 이상	지배기업 매출액 + 종속기업 매출액

I. 중소기업 판정 (조특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 판정의 세부사항

(3) 중소기업 규모기준(중기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의복, 가죽, 전기장비 등 제조업	C14, C15 등	매출액 1,500억원 이하
농업, 식료품 제조업, 건설업 등	A, C10, F 등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의약품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C21, C33 등	매출액 80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M, N, Q 등	매출액 6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	I, K, L 등	매출액 400억원 이하

I. 중소기업 판정 (조특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 판정의 세부사항

(4) 소기업 규모기준(중기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의복, 가죽, 전기장비 등 제조업	C14, C15 등	매출액 120억원 이하
농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등	A, H, F 등	매출액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G, J 등	매출액 50억원 이하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L, M, N 등	매출액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I, P, Q 등	매출액 10억원 이하

Ch.02

제 2회차 강의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Ⅱ.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감면 내용

중소기업 중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25.12.31.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일부 감면

(1) 감면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2019년부터 소급적용)
알뜰주유소(2022~2023 한시적 감면)

Ⅱ.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2) 감면율

지역 구분		업종 구분	2025까지	통관대리	알뜰주유소
수도권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10%		
		그 외 해당 업종	20%	10%	20%
	중기업	지식기반산업	10%		10%
수도권 외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10%		
		그 외 해당 업종	30%	15%	
	중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5%		
		그 외 해당 업종	15%	7.5%	15%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도

Ⅱ.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감면적용 주의사항

- 창업중소기업감면, 벤처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불가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하고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사회보험료, 고용증대, 연구인력개발비, 근로소득증대 등)
- 감가상각의제 적용
- 최저한세 해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Ⅱ. (2)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특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2024.12.31. 이전에 감면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감면

(1) 감면업종

제조업(국내OEM 포함), 건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 2018년 부터 : 통신판매업, 이용 및 미용업

(2018.5.29.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 2020년 부터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등

Ⅱ. (2)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특법 제6조)

(2) 감면대상 창업

① 일반창업

② 청년창업 : 창업 당시 연령요건을 갖춘 청년 대표자가 법인의 지배주주 중 최대주주일 것

※ 연령요건 : 15~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를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

③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

Ⅱ. (2)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특법 제6조)

(3) 감면율

- 2018.5.29. 이후 창업

창업유형	감면율	추가감면
일반창업 벤처창업 과밀억제권 안 청년창업	5년간 50%	인원증가 시 (과밀억제권 안 일반창업은 제외)
과밀억제권 밖 청년창업	5년간 100%	해당 없음

Ⅱ. (2)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특법 제6조)

➤ 창업벤처기업 감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2024.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1) 감면율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2) 다음의 경우 감면 배제

- ①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 ②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Ⅱ. (2)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특법 제6조)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감면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2024.12.31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감면 적용 배제

Ⅱ. (2)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특법 제6조)

➤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감면

- 2018년 이후 2024.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한 다음의 중소기업이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면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 ①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
- ② 창업벤처중소기업
- ③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신성장서비스업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등

Ⅱ. (2)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특법 제6조)

➤ 추가감면

- 2018년 이후 창업분부터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감면 적용

- 추가감면율

$$\frac{(\text{해당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text{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text{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times 50\%$$

※ 최소고용인원 :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 10명,
그 밖의 업종은 5명

Ⅱ. (2)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특법 제6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국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Ⅱ. (2)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특법 제6조)

➤ 창업의 범위

-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 감면혜택 부여 취지
- 중소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창업일 = 법인설립등기일)
-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산가액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이면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창업으로 본다
 - 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기업의 임직원이 사업 개시
 - ② 분리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기업의 임직원 간의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할 것
 - ③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일 것

Ⅱ. (2)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특법 제6조)

➤ 창업의 범위

- 다음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 또는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Ⅱ. (2)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특법 제6조)

➤ 감면적용 주의사항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불가
-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 불가
- 고용증가 추가감면을 제외한 창업중소기업감면과 고용증대, 연구인력개발비, 근로소득증대, 정규직전환 등의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감가상각의제 적용
- 최저한세 해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Ⅱ. (3) 세액감면 공통사항

➤ 소득의 구분계산

-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
- 감면사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외수익 중 수입이자, 고정자산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을 제외하여 감면소득을 계산
-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공통 익금		수입금액, 매출액에 비례
공통 손금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 매출액에 비례
	업종이 다른 경우	각 사업의 개별 손금에 비례

Ⅱ. (3) 세액감면 공통사항

➤ 감면배제

- 추계결정시 감면배제
- 무신고자, 경정결정, 현금영수증 미가입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자에 대한 감면 배제

➤ 추정세액에 대한 감면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 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면 배제

Ch.03

제 3회차 강의 연구인력개발 ·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Ⅲ. (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 세액공제 내용

-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
- **연구개발**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① 자체연구개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②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 : 연구소, 대학 등

Ⅲ. (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 세액공제 내용

- **인력개발** :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
- 다음은 공제대상 비용에서 제외
 - ①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Ⅲ. (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 세액공제 금액

- 중소기업

- ① 신성장동력(별표7) 및 원천기술(별표8) 연구개발비 :
당기 발생액 x 30% +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동력 등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x 3배(10% 한도)

- ② 일반연구개발비(별표6) : 다음 중 선택
 - a. 당기 발생액 x 25%
 - b. (당기발생액 -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의 평균액) x 50%

Ⅲ. (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 세액공제 적용 세부사항

(1) 주주이면서 임원인 연구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원에서 제외

- ①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②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 ③ 위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Ⅲ. (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 세액공제 적용 세부사항

(2)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 ①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 ②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퇴직연금 불입액,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외부에서 위탁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제외
- ③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
연월차 수당, 각종 성과급, 차액 보전형
주식매수선택권은 2019년 귀속부터 인건비 포함

Ⅲ. (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 세액공제 적용 세부사항

(3) 공제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대상 출연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인2020-4161, 2021.05.13)

- ② 청년 및 장기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회사 불입액은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

Ⅲ. (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 세액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 다른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가능
- 수도권 배제 규정 없으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안됨
- 2021년 이후 법인세 신고 시 공제되지 않은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

Ⅲ. (2)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자

- 모든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
-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외

Ⅲ. (2)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

-> 중고품 및 운용리스자산 제외

(1)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시설장비 등
- 토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은 제외

Ⅲ. (2)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

(2)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유형, 무형자산

- ①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 ② 에너지절약시설
- ③ 환경보전시설
- ④ 근로자복지증진시설
- ⑤ 안전시설
- ⑥ 운수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 ⑦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⑧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 ⑨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Ⅲ. (2)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세액공제

(1) 기본공제 +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

구분	2021~2022년 투자			2023~2024년 투자		
	일반투자	신성장 원천기술	전략기술	일반투자	신성장 원천기술	전략기술
중소기업	10%	12%	16%	10%	12%	25%
중견기업	3%	5%	8%	5%	6%	15%
대기업	1%	3%	6%	1%	3%	15%

- 신성장 · 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차, 인공지능, 반도체 등 소재 · 부품, 바이오 · 화합물의약 등
-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Ⅲ. (2)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세액공제

(1) 기본공제 + 추가공제

② 추가공제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 3%(국가전략기술 4%)

-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의 2배 한도
- 직전 3년간 투자금액 없는 경우 추가공제 X

Ⅲ. (2)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세액공제

(2) 임시투자세액공제 (2023년 한시 적용)

① 기본공제

구분	일반투자	신성장·원천기술	전략기술
중소기업	12%	18%	25%
중견기업	7%	10%	15%
대기업	3%	6%	15%

Ⅲ. (2)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세액공제

(2) 임시투자세액공제 (2023년 한시 적용)

② 추가공제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X 10%

-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의 2배 한도
- 직전 3년간 투자금액 없는 경우 추가공제 X

Ⅲ. (2)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투자금액의 계산

세액공제 적용 대상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text{Max}(\text{①}, \text{②}) - (\text{③} + \text{④})$

- ①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
- ②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 ③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
- ④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 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Ⅲ. (2)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투자종류	'89 이전 창업	'90 이후 창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대체투자	공제 가능	공제 가능	공제 불가
증설투자	공제 불가 (산업단지, 공업지역 가능)	공제 불가 (산업단지, 공업지역 가능)	공제 불가
무조건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방송장비(제작, 편집, 송신 등) - 정보통신장비(교환, 전송, 선로, 정보처리설비)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증진, 안전시설,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Ⅲ. (2)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건물, 구축물은 5년) 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 임대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추징X

Ⅲ. (2)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세액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X
다만,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해연도 감면은
중복 적용 가능
- 최저한세 해당, 농어촌특별세 과세
- 결손,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

Ch.04

제 4회차 강의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

IV.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의4)

➤ 세액공제 내용

- 중소기업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면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 하고, 다음 과세연도에 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동일한 금액을 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국가보조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2022년부터 전체 또는 청년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가공제 안되고, 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

IV.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의4)

➤ 세액공제 금액

(1)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X 청년 상시근로 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X 100%

※ 청년 등 : 2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와 경력단절여성

(2)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X 청년 외 상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X 50% (신성장서비스업 75%)

IV.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의4)

➤ 상시근로자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거주자인 외국인 포함) 근로자. 다음은 제외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② 단시간근로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 ③ 출자, 비출자, 등기, 비등기 구분없이 사실상의 임원
-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⑤ ④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
- ⑥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⑦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IV.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의4)

➤ 상시근로자

(2)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① 상시근로자 수 =

$$\frac{\text{해당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text{해당기간의 개월 수}}$$

② 청년 상시근로자 수 =

$$\frac{\text{해당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수의 합}}{\text{해당기간의 개월 수}}$$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

매월 말일 입사자 및 퇴사자는 모두 입, 퇴사한 달을 근무월수에 포함

IV.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의4)

➤ 상시근로자

(3) 직전, 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 ① 창업 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 ②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개인의 법인전환,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업 자산인수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운영)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IV.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의4)

➤ 상시근로자

(3) 직전, 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③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해당 과세연도에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 승계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시킨 기업은 승계시킨 청년 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함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 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함

IV.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의4)

➤ 상시근로자

(4) 청년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 **청년 등**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 + 경력단절여성
고용증대 세액공제 = 청년 + 장애인 + 60세 이상

IV.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의4)

➤ 추가납부세액 계산

(1)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①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한 경우

[청년외 상시근로자 증가 수 X (청년등 공제금액 - 청년외 공제금액)]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X 청년등 공제금액

[사례] 전체 3명 감소, 청년 5명 감소, 청년외 2명 증가

$$\text{추가납부세액} = [2\text{명} \times (100\% - 50\%)] + 3\text{명} \times 100\%$$

IV.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의4)

➤ 추가납부세액 계산

(1)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② 그 밖의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X 청년등 공제금액)
+ (청년외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X 청년외 공제금액)

[사례] 전체 3명 감소, 청년 2명 감소, 청년외 1명 감소

$$\text{추가납부세액} = (2\text{명} \times 100\%) + (1\text{명} \times 50\%)$$

IV.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의4)

➤ 추가납부세액 계산

(2) 전체 상시근로자 불변,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X (청년등 공제금액 - 청년외 공제금액)

[사례] 전체 불변, 청년 2명 감소

추가납부세액 = 2명 X (100% 50%)

- 청년이 퇴사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되어서 청년이 청년외가 된 경우
- 청년의 감소인원과 청년외의 증가인원이 일치하는 경우

IV.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의4)

➤ 세액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 최저한세 해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결손,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
- 2022년 이후 세액공제분부터 공제받은 과세기간 이후 1년 이내 인원이 감소하면 추가공제 안되고,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납부
-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 불가(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가능)

IV.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 세액공제 내용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 최초 공제 후 2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불변이면 추가공제**
 - 최초 공제 후 2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가 공제 안되며,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납부**
- ※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IV.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 세액공제 내용

▷ 공제액

(1) 2018년~2020년, 2023년 이후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외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청년등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공제기간	해당연도 포함 3년			2년간

(2) 2021년~2022년 (한시적 증액)

- 수도권 밖 중소기업 : 청년외 770만원, 청년등 1,300만원
- 수도권 밖 중견기업 : 청년등 900만원
- 수도권 밖 대기업 : 청년등 500만원

IV.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 상시근로자 등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동일
- 청년 등
 - ① 15세 이상 29세 이하. 병역이행기간(6년 한도)을 빼고 나이계산
 - ② 장애인
 - ③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2021년부터)

IV.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 추가납부세액 계산

(1)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① 상시근로자 감소

a. 청년 등 감소 인원 >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청년 등 초과 감소 인원 X (청년등 세액공제 - 청년외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X 청년등 공제액

[사례] 전체 3명 감소, 청년 5명 감소, 청년외 2명 증가

$$2 \times (1,100 - 700) + 3 \times 1,100 = 4,100\text{만원}$$

IV.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 추가납부세액 계산

(1)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① 상시근로자 감소

b. 청년 등 감소 인원 <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청년 등 감소 인원 X 청년등 공제액

+ 청년외 감소 인원 X 청년외 공제액

[사례] 전체 5명 감소, 청년 3명 감소, 청년외 2명 감소

$$3 \times 1,100 + 2 \times 700 = 4,700\text{만원}$$

※ 1차년도에 청년이 나이들어서 청년X -> 추가납부X

IV.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 추가납부세액 계산

(1)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② 상시근로자 불변, 청년등 감소

청년등 감소 인원 \times (청년등 공제액 - 청년외 공제액)

※ 청년 등 감소 인원 : 최초 공제받은 연도의 청년등 증가인원 한도

[사례] 1차 연도 : 전체 5명 증가, 청년등 3명 증가, 청년외 2명 증가

세액공제 = $3 \times 1,100 + 2 \times 700 = 4,700$ 만원

2차 연도 : 전체 3명 증가, 청년등 2명 감소, 청년외 5명 증가

청년등이 감소 -> 추가공제 \times

청년등이 청년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추가공제

세액공제 = $[3$ (1차공제당시 청년등 증가인원) $+ 2$

(청년외 증가 인원) \times 공제액 = $5 \times 700 = 3,500$ 만원

IV.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 추가납부세액 계산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215, 2023.03.06.

고용이 증가한 연도에 청년등이 증가하였지만 청년등 우대공제를 받을 것인지 청년외 일반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에 해당한다.

즉, 당초 청년등 우대공제를 받았으나 사후관리 기간 중 전체 인원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 등이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에 대하여 청년등 과 청년외의 공제차액을 납부하고, 당초 우대공제 받은 청년등은 잔여 기간에 청년외 일반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IV.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 추가납부세액 계산

(2) 2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① 상시근로자 감소

a. 청년 등 감소 인원 >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청년 등 초과 감소 인원 x (청년등 세액공제 - 청년외 세액공제)
x 직전 2년간 공제 횟수 +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x 청년등
공제액 x 직전 2년간 공제 횟수

IV.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 추가납부세액 계산

(2) 2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① 상시근로자 감소

b. 청년 등 감소 인원 <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청년 등 감소 인원 × 청년등 공제액 × 직전 2년간 공제횟수
+ 청년외 감소 인원 × 청년외 공제액 × 직전 2년간 공제횟수

IV.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 추가납부세액 계산

(2) 2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② 상시근로자 불변, 청년등 감소

청년등 감소 인원 \times (청년등 공제액 - 청년외 공제액) \times
직전 2년간 공제횟수

※ 청년 등 감소 인원 : 최초 공제받은 연도의 청년등 증가인원 한도

IV.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 세액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 최저한세 해당, 농어촌특별세 과세
- 결손,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
-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 인원이 감소하면 추가납부
-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창업중소기업감면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제외하고 다른 감면 중 1 선택하여 중복 적용 가능

IV. (3) 통합고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8)

➤ 세액공제 내용

- 고용과 관련하여 분산되어 있던 5가지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2023, 2024년은 종전처럼 각 개별규정을 적용 또는 통합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
- 통합 고용세액공제와 개별세액공제 **선택가능**
 -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
 -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통합 고용세액공제 중 **추가공제로 이전**(종전 개별규정 적용X)
 - ①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②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IV. (3) 통합고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8)

➤ 개별 고용관련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차이

구 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법 제23조 제10항	좌동
인원수 계산	시행령 제26의7 제7항	좌동(시행령 제26의8 제6항)
청년등	청년(29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청년(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공제세액 (수도권)	청년외 1인 700만원 청년등 1인 1,100만원	청년외 1인 850만원 청년등 1인 1,450만원
추가납부세액	법 제29의7 제2항	좌동(법 제29조의8 제2항)
개별세액공제	정규직전환: 1인 1,000만원 경력단절여성: 인건비 30% 육아휴직복직: 인건비30%	정규직전환: 1인 1,300만원 경력단절여성: 청년등에 포함 육아휴직복직: 1인 1,300만원

IV. (3) 통합고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8)

▶ 세액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 최저한세 해당, 농어촌특별세 과세
- 결손,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
-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 인원이 감소하면 추가납부
-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창업중소기업감면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제외하고 다른 감면 중 1 선택하여 중복 적용 가능

이상으로

2024년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조특법의 세액감면 · 세액공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